



의안번호	제63호
------	------

## 논산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18. 8. 28.

# 논산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63호
----------	------

제출일 : 2018. 8. 28.

제출자 : 논산시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과장

## 1. 제안이유

- 지역자활센터가 지정된 시군구는 우선 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실시한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업무를 논산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 저소득 계층의 자활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위탁사무
  - ▶ 논산지역자활센터
- 위탁기간
  - 현재 : 2016. 01. 01. ~ 2018. 12. 31.(3년간)
  - 향후 : 2019. 01. 01. ~ 2021. 12. 31.
- 사업내용 :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 시장진입형 : 참식당사업단, 참재활용사업단, 치밥치킨사업단
  - 사회서비스형 : 참카페사업단, 참김사업단, 참고소미사업단
- 위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지역자활센터 등)

### 3. 민간위탁 추진현황

- 위탁기간 : 2016. 01. 01. ~ 2018. 12. 31. (1년 단위 사업으로 매년 재계약)
- 위탁기관 : 논산지역자활센터
- 위탁법인 : 구세군사회복지재단
- 위탁방법 : 지정위탁
- 지정일자 : 2004년 12월 8일
- 위탁금액 : 3년간 2,650,000천원
- 업무범위
  - 자활근로 사업단 운영 관리

구분	사업명	사업 내용	비고(전망)
시장진입형	참식당 사업단	- 요식 사업 노하우 습득 - 각종 반찬류와 식사류 판매	지역 내 먹거리 제공
	참재활용 사업단	- 재활용품 수거와 분리, 운반 - 폐기물품 수거	깨끗한 환경 조성
	치밥치킨 사업단	- 프랜차이즈 사업 노하우 습득 - 각종 치킨 판매	지역 내 먹거리 제공
사회서비스형	참카페 사업단	- 이동식 카페차량 운영 - 커피 및 음료 판매 습득	지역 내 먹거리 제공
	참김 사업단	- 장비 사용기술 습득 - 전통방식 즉석 철판 구이식 김 생산	지역 내 먹거리 제공
	참고소미 사업단	- 장비 사용기술 습득 - 건강한 간식 판매	지역 내 먹거리 제공
인건비지원	자활기업	- 회오리세차 인건비지원 - 참누룽지 인건비지원	
총 6개 사업단 1개 인건비지원		시장 진입형 : 3개 사업단 사회서비스형 : 3개 사업단	

○ 지역자활센터 운영 관리

사업 부분	사업 내용	비고
홍보·출판	- 센터 홈페이지(weapontoo.wix.com/nonsanjh) 운영 및 관리	팀 장
교육·훈련	- 실무자 교육 - 요양보호사 교육 - 자활사업단 구성원 교육·훈련	실 장 선임팀장
자활 네트워크(내부)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자원봉사자(단체) 개발 및 관리	실 장
자활 네트워크(외부)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및 세종·충남지부 활동 강화 - 논산시 사회복지협의체 - 시민사회단체 연대활동	센 터 장 실 장
운영관리	-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운영관리 전반 -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및 4대 바우처 운영관리	실 장 선임팀장

□ 예산집행 현황

○ 예산현황

구 분	예 산 액 (천원)			비고
	합 계	고정비	변동비	
2016년	900,000	900,000		
2017년	850,000	850,000		
2018년	900,000	900,000		

○ 예산집행실적

<2016년도>

(단위 : 천원)

사업단별	예산액	집행액					비고
		합계	인건비	사회보험 등 공과금	교육 및 행사 등	자재구입 등	
	900,000	900,000	589,541	53,311	2,891	254,257	
참누룽지	160,000	160,000	105,821	12,828	653	40,698	
참젓갈	143,000	143,000	99,286	9,515	518	33,681	
참식당	145,000	145,000	82,629	11,426	480	50,465	
참재활용	125,000	125,000	82,813	5,810	480	35,897	
치밥치킨	155,030	155,030	94,526	6,512	34	53,958	
참카페	123,000	123,000	75,604	7,172	726	39,498	
참김	1,000	1,000	892	48	0	60	
인건비지원	47,970	47,970	47,970	0	0	0	

<2017년도>

(단위 : 천원)

사업단별	예산액	집행액					비고
		합계	인건비	사회보험 등 공과금	교육 및 행사 등	자재구입 등	
	850,000	850,000	588,052	58,184	1,730	202,034	
참누룽지	135,000	135,000	86,335	10,404	218	38,043	
참식당	160,000	160,000	116,782	15,570	220	27,428	
참재활용	155,000	155,000	92,949	5,896	260	55,895	
치밥치킨	150,000	150,000	97,478	9,246	168	43,108	
참카페	113,500	113,500	88,921	7,232	580	16,767	
참김	116,926	116,926	86,526	9,808	284	20,308	
참고소미	1,500	1,500	987	28	-	485	
인건비지원	18,074	18,074	-	-	-	-	

<2018년도>

(단위 : 천원)

사업단별	예산액	집행액					비고
		합계	인건비	사회보험 등 공과금	교육 및 행사	자재구입 등	
	900,000	485,055	348,337	32,617	0	104,101	
참식당	151,000	66,475	42,439	7,938	-	16,098	
참재활용	151,000	92,826	64,963	4,989	-	22,874	
치밥치킨	151,000	102,398	61,826	5,033	-	35,539	
참카페	122,000	58,649	47,594	4,534	-	6,521	
참김	122,000	66,602	50,738	6,267	-	9,597	
참고소미	123,000	62,211	44,883	3,856	-	13,472	
인건비지원	80,000	35,894	35,894	-	-	-	

- 2016년, 2017년도 위탁금액 모두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는 7월 현재 전체 위탁금액 9억에서 총 485,055천원 집행

○ 민간위탁 운영 실적

- 2015년 보건복지부 최우수기관 선정
- 2016년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선정
- 2017년 충청남도 우수자활센터 도지사 표창

○ 2018년도 민간위탁 운영 현황

구분	사 업 명	사업대상(명)	사 업 내 용	비 고(전망)
시장 진입형	참식당사업단	총 5명 -수급자 : 3명 -차상위 : 2명	-요식 사업 노하우 습득 -각종 반찬류와 식사류 판매	지역내 먹거리 제공
	참재활용사업단	총 9명 -수급자 : 9명 -차상위 : 0명	-재활용품 수거와 분리, 운반 -폐기물품 수거	깨끗한 환경 조성
	치밥치킨사업단	총 8명 -수급자 : 8명 -차상위 : 0명	-프랜차이즈 사업 노하우 습득 -각종 치킨 판매	지역내 먹거리 제공
사회 서비스형	참카페사업단	총 8명 -수급자 : 6명 -차상위 : 2명	-이동식 카페차량 운영 -커피 및 음료 판매 습득	지역내 먹거리 제공
	참김사업단	총 7명 -수급자 : 5명 -차상위 : 2명	-장비 사용기술 습득 -전통방식 즉석 철판 구이식 김생산	지역내 먹거리 제공
	참고소미사업단	총 5명 -수급자 : 3명 -차상위 : 2명	-장비 사용기술 습득 -건강한 간식 판매	지역내 먹거리 제공
	인건비지원	총 5명 -수급자 : 5명 -차상위 : 0명	-회오리세차 인건비지원 -참누룽지 인건비지원	자활기업 인건비지원
총 6개 사업단 1개 인건비지원		총 42명 -수급자 : 34명 -차상위 : 8명	시장 진입형 : 3개 사업단 사회서비스형 : 3개 사업단	

## 4.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

### □ 민간위탁사무 이행성과 정도

구분	운영 성과 평가	비고
위탁 조건 이행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동안 위탁한 민간위탁금 전액 집행</li> <li>•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 참여 수급자들의 탈수급, 취업 등을 이끌어내고, 자활기업 출범으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기여</li> </ul>	
지도점검시 지적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li> <li>• 운영위원회 구성 부적정 지적</li> </ul>	
지적사항 개선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기 만료된 운영위원 재위촉 조치</li> </ul>	
위탁기간 중 수범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선정</li> <li>• 2017년 충청남도 우수자활센터 도지사 표창</li> </ul>	

### □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 종합의견

○ 민간위탁기관인 논산지역자활센터는 3년 동안 위탁한 민간위탁금에 대하여 자활지침에 따라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운영, 매년 실시하는 지도점검으로 지적사항 개선을 통하여 투명한 운영에 노력하고 있음.

2016년에는 전국 지역자활센터 시설평가 부문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2017년에는 충청남도 우수자활센터로 도지사 표창을 받는 등의 공적을 세워 민간위탁 업무 이행성과 양호하다고 사료됨.

## 5. 민간위탁 운영 방안

- 현재 민간위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3년간)  
→ 향후 민간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간)
- 사업내용 : 자활근로사업
- 자활근로사업 참여 및 운영 인원
  - 참여인원 : 연 70여명
  - 운영인원 : 6명(센터장1, 실장1, 팀장4)
- 위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지역자활센터 등)
- 소요비용 : 연 900,000천원

사 업 단	자활근로사업비			참여인원 (단위 : 명)
	인 건 비	사 업 비	계	
총 계	690,700,000	209,300,000	900,000,000	47
참식당 사업단	105,700,000	45,300,000	151,000,000	7
참재활용 사업단	105,700,000	45,300,000	151,000,000	7
치밥치킨 사업단	105,700,000	45,300,000	151,000,000	7
시장진입형 소계	397,100,000	135,900,000	533,000,000	26
참카페사업단	97,600,000	24,400,000	122,000,000	7
참김사업단	97,600,000	24,400,000	122,000,000	7
참고소미사업단	98,400,000	24,600,000	123,000,000	7
사회서비스형 소계	293,600,000	73,400,000	367,000,000	21
자활기업 인건비지원	80,000,000	-	80,000,000	5

## 6. 실무부서 종합의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 운영지침 상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기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참고

### □ 추진절차



- 신청단체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참여대상자 선발, 세부 사업내용, 예산집행 및 결산 등 사업 전 과정을 일괄하여 위탁하거나, 필요시 사업별로 개별 위탁가능
- 사업신청단체로부터 공모를 받아 결정하되, 지자체에서 적합한 사업을 선정한 후 시행기관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도 가능
- 민간위탁사업의 공고, 사업안내 등
  - 시·군·구는 신규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위탁규모(예산 등)를 감안하여 가능한 신속히 공고, 사업안내 및 홍보를 실시
-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시·군·구의 경우 계속되거나 기존의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여 실시가능하며,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공모절차 등을 통하여 선발 가능

### □ 민간위탁계약 등 체결

- 시·군·구별로 자활기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사업 확정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역특성, 사업여건, 당사자간의 협의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 민간위탁 실시기관의 관리

- 보장기관은 실시중인 자활근로사업단의 시장진입 및 자활기업 전환가능성, 수익금 발생현황 등 사업추진 실적을 검토하여, 사업의 계속추진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을 조기 종료하거나, 업종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 관계 법령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